

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남재경

-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!
그리고 교통위원회 선배.동료 위원님 여러분!
새누리당 종로 1지역의 남재경 의원입니다.
-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-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현행 「도로교통법」은 횡단보도 10미터 이내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으나 운전자들의 불법주차 관행 및 인식부족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.
-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.정차는 그로 인해 통학로가 좁아지거나, 시야가 가려지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.

□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·정차 차량은 2011년 약 6만 건에서 2012년 약 7만1300건, 2013년 약 7만3400건, 2014년 약 7만7400건 등 해마다 증가하여 2015년에는 무려 약 10만 건에 달했습니다. 5년간 합계는 무려 약 37만6000건에 이른다고 합니다.

불법 주·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도 매년 100여 건을 넘습니다.

□ 이에 본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인 곳의 주·정차를 금지하고, 이에 대한 안내 및 단속 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,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문화 개선과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환경 조성에도 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, 본 개정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□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